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(안 제33조 별표 4 제4호바목)
-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연간 매출액 1,00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-

대통령령 제 호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감면 대상란 제4호 중 “600억원”을 “1,000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감면 대상란 제4호바목 중 “600억원”을 “1,000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4]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(제33조 관련) 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<u>600억원</u> 미만인 경우 가. ~ 마. (생략) 바.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 <u>600억원</u> 미만인 경우	[별표 4]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(제33조 관련) 4. ----- ----- ---<u>1,000억원</u>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----- --- <u>1,000억원</u>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54